2019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목 차 ◀◀◀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 1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 2
3. 현지화 지원 ····· 3

2 수출품목육성・발굴
4. 수출통합조직 육성 ····· 4
5. 선도조직 기반육성 ····· 5
6. 수출상품화 지원 ····· 6
7.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 7
8.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 8
9.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 9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0.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 10
11. 안전성조사 ····· 11
12. 선도유지제 지원 ····· 12

4 통관 및 물류지원
13. 수출물류비 지원 ····· 13
14.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14
15. 해외공동물류센터 ····· 15
16. 중국 콜드체인구축 ····· 16
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 17
18.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 18
19. 수출보험지원 ····· 19
20. 해외인증 등록지원 ····· 22

5 현지 유통망 개척
2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25
22. 바이어 거래알선 ····· 28
23.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 30
24.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 31
25. K-Food Fair ····· 32
26. 해외판촉행사 지원 ····· 33
27.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 34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2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35
2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36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수출정보 수요자</td></tr>
<tr><td>지원분야</td><td>○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td></tr>
<tr><td>지원내용</td><td>○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tr><th>구 분</th><th>서 비 스 내 용</th></tr>
<tr><td>뉴스</td><td>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td></tr>
<tr><td>품목</td><td>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td>국가</td><td>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td>제도</td><td>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td></tr>
<tr><td>자료</td><td>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스토리뉴스 등</td></tr>
<tr><td>통계</td><td>월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정보</td></tr>
</table>
○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
– 국가정보 및 시장통계, 시장트렌드, 유통채널현황 등(일반/심층조사)</td></tr>
<tr><td>이용방법</td><td>○ 농수산식품수출정보 KATI
–홈페이지 및 모바일: www.kati.net
–SNS 채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2018KATI, (카카오톡 ID)kati
○ 해외시장맞춤조사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최신 수출정보 One-stop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국가별 정보제공 및 중소업체대상 해외시장 맞춤정보 지원</td></tr>
<tr><td>담당부서</td><td>○ KATI 홈페이지 이용
–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
○ 해외시장맞춤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td></tr>
</table>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3">○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수출업체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확대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3">○ 중소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기업 제외)
○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대상 (수산물 제외)</td></tr>
<tr><td rowspan="3">지원분야
및
지원내용</td><td>구 분</td><td>지원분야</td><td>지원내용</td></tr>
<tr><td>심층컨설팅</td><td>▸ 컨설팅사-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초보기업(수출초보업체): 무역실무 능력배양, 통관·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등 수출 필요조건 충족 등 국내 수출인프라 구축, 마켓테스트
② 시장다변화기업(기수출업체):신규 해외 바이어발굴, 거래알선·체결, 유통망입점, 샘플수출, 해외 통관·검역 등 시장개척</td><td>[장기 8개월 이내]
컨설팅 비용 80% 정부지원
(최대 35백만원 한도)
* 단, 연속국가지원시 2년차 70% 3년차 60%지원</td></tr>
<tr><td>현장코칭</td><td>▸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 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품질관리, 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 상담 등
② FTA수출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보급</td><td>[단기 5일~10일 방문 코칭]
o 전문위원 코칭비 비용정액
o 업체 자부담금 : 10만원
* (예비)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18년 매출 1억원 미만 기업 무료
o 통번역 및 홍보물 제작
: 2백만원 한도내 80% 지원</td></tr>
<tr><td>추진절차</td><td colspan="3">○ 심층컨설팅
공고 ▶ 접수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현장평가 ▶ 수행계획서 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 ▶ 완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현장코칭
공고 ▶ 접수 ▶ 업체 선정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전문위원 매칭 ▶ 현장코칭 수행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td></tr>
</table>

* 위 사업 지원내용은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변동가능

3. 현지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홍보</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분야
및
지원내용</td><td>○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22개국
–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EU(프랑스, 독일 등), 중동(UAE)
○ 지원방법 : 변호사, 통관 전문가 등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 추진
○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비관세
장벽해소</td><td>• 현지법률·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tr><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r><td>법률일반</td><td>-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td></tr>
<tr><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td></tr>
<tr><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tr>
<tr><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td></tr>
</table></td></tr>
<tr><td>라벨링 지원</td><td>•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스티커인쇄 비용 예외)</td></tr>
<tr><td>상표권 지원</td><td>•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td></tr>
<tr><td>중국 시험수출
One-stop 지원</td><td>• 대중국 시험수출「통관 사전준비→물류→마케팅」단계적 지원</td></tr>
<tr><td>포장디자인
현지화</td><td>•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td></tr>
<tr><td>바이어
특화지원</td><td>• 식품 위생검사비(사전검역 포함),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지원
• 바이어 농식품 수입 컨설팅 등</td></tr>
</table>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장디자인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td></tr>
<tr><td>이용방법</td><td>○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
○ 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모집공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td></tr>
</table>

4. 수출통합조직 육성

개 요	○ 수출마케팅 창구단일화 및 수출 신선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업체가 참여하는 통합조직화로 품질강화, 공동마케팅 및 수출단가 투명화를 통한 과당경쟁방지 등 수출인프라 강화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수출통합조직 –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을 통해 수출협의회 및 선도조직 등의 수출통합조직화 지속 유도 (‘18 지정 : 파프리카, 버섯, 딸기)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지정요건 : 해당 품목의 국가전체 수출비중 2/3 이상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전체 ○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 수출규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5천~8억원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6~10% 지원
진행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19년 수출통합조직 운영지침 준용

5.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개 요	○ 고품질의 안전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농가소득 연계 ○ 기존 수출선도조직 1단계(개별) 조직의 2단계(연합) 조직화 확대 및 수출업체 중심의 수출창구일원화 강화를 통해 수출통합조직화 유도
지원대상	○ 수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선도조직(개별, 연합)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 지원내용 – 기반육성 사업비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 수출규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4천만원~3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4~8% 지원
진행절차	운영계획 수립 (연초) ▶ 모집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신청방법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혹은 http://global.at.or.kr)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6. 수출상품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
<tr><td>1단계</td><td>•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테스트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td><td>-</td></tr>
<tr><td>2단계</td><td>•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td><td>※ 2018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td></tr>
</table>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상품성 · 수출업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비계량평가 대상업체 선정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20점) : 해외지사 및 지역본부 평가
○ 공개발표평가(비계량, 8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1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모집시기</td><td>○ 2019.1.18.(금) 15:00까지</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2019년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 모집 신청</td></tr>
</table>

7.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우수 농식품 브랜드 대상 마케팅 집중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우선 선정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
<tr><th>구 분</th><th>세부사항</th></tr>
<tr><td>지원내용</td><td>○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홍보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td></tr>
<tr><td>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업체당 최대 2억원)
○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
* 약정서에 기재한 총사업비의 8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td></tr>
<tr><td>지원업체</td><td>○ 10업체 내외</td></tr>
</tabl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 수산식품, '19년 aT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업체 지원 제외
* 수출통합조직(파프리카, 버섯) 및 미가입 업체는 지원 제외
(단, 수출통합조직 회원사 및 미가입 업체 중 취급 품목에 따라 지원 가능)</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
– 계량평가(30점) :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등 계량실적 평가
– 발표평가(7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 및 심사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약정체결 (2월 말) ▶ 사업추진 (3~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예정) : 2019.1.7.(월)~1.25(금)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able>

8.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table>
<tr><td>개 요</td><td>○ 정부인증 농식품 등 우리 우수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목표국 현지스타(KOL)와 매칭을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주원료를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우선 선정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 등</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농식품 스타 콜라보 마케팅</th></tr>
<tr><td>지원내용</td><td>○ 현지 스타의 섭외 및 관리, 홍보계약, 제작지원 등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와 연계한 개별 지원업체의 수출상품 온 · 오프라인 홍보비용은 80% 지원</td></tr>
<tr><td>사업비
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최대 80백만원)</td></tr>
<tr><td>선정방법</td><td>○(대행업체) 연예기획사 등 업계에서 참여의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서 접수 및 내·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지원업체)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td></tr>
<tr><td>사업량</td><td>○ 8업체 내외</td></tr>
</table>
*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선정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평가대상 : 업체별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
* 대행업체 선정은 별도 평가방법으로 추진</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약정체결 (2월말) ▶ 사업추진 (3~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19.1.9~1.30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able>

9.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개 요	○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지원대상	○ 최근 3년간(연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상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20개 사업메뉴) 지원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구분
1 수출 준비	수출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위탁
	수출전문인력 양성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자체
	기술도입	▪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위탁
	상품분석	▪ 제품의 효능, 안전성 등 분석 위한 외부기관 용역	위탁
	해외정보조사	▪ 해외시장 특성, 바이어 등 정보 습득 위한 위탁조사 등	위탁
	해외전문가 초청	▪ 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자체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위탁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위탁
	해외인증 등록	▪ 주요 농식품 수출관련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위탁
2 해외 진출	현지시장조사	▪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출장	자체
	샘플 운송통관	▪ 신규 바이어 또는 신제품의 샘플 운송·통관·검사	자체
	개별박람회 참가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자체
	개별바이어 초청	▪ 신규 거래선 확보 위한 유력 해외 농식품 바이어 초청	자체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자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홍보	자체
3 경쟁력 강화	FTA특혜관세활용	▪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발급 대행	위탁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자체
	소비자 체험 홍보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자체
	바이어 상담 홍보	▪ 해외 오프라인 바이어 대상 홍보 및 상담회	자체
	홍보물 개발	▪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위탁

* 지원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원 항목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수출 지원	바우처 정산
'18.12.21 ~ '19.1.11	'19.1~2월	'19.2월말	'19.3월중	'19.3~ 11월	~ '19.12월

지원한도	○ 집행 사업비의 80%(270백만원 한도) * 사업메뉴 중 특정 1개 사업의 비중이 바우처 총액의 50%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선정방법	○ 모집공고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서면) → 3차 심사(현장) → 선정(협의회) – (1차 계량) 수출경쟁력, 재무건전성, 제품역량 등 *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발 – (2차 비계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품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의 적정성 등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0.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교육

<table>
<tr><td>개 요</td><td>○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수출집약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품질향상 추진</td></tr>
<tr><td>지원대상</td><td>○ 지원대상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td></tr>
<tr><td>지원품목</td><td>○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td></tr>
<tr><td>신청요건</td><td>○ 동일품목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 단지 연합신청 및 수출업체 참여형태 우선지원 및 사업추진 최소단위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개소</td></tr>
<tr><td>지원내용</td><td>○ 농가인식개선, 농가정보화, 전문기술교육, 농가품질관리 등 소요예산의 90%지원
(지원한도 : 소속농가수 50인이상 20백만원, 20인이상 15백만원, 20인미만 12백만원)
<table>
<tr><th>부문</th><th>세부지원내역</th></tr>
<tr><td>농가
인식개선</td><td>– 소속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 워크숍(개인)
– 관련 자격증(품관사 등) 취득비용 및 전문서적구입</td></tr>
<tr><td>농가
정보화</td><td>– 농집 코디네이터(농가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비용
– 단지농가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제고 교육 등</td></tr>
<tr><td>전문기술
교육</td><td>– 대표품목 신기술, 신품종 도입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자·종묘 구입</td></tr>
<tr><td>품질관리
(농가)</td><td>–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td></tr>
<tr><td>사례전파</td><td>–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td></tr>
</table></td></tr>
</table>

11. 안전성조사

개 요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업체) ▶ 신청서류 검토 (지역본부) ▶ 검사비 지원 (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신청서류 제출 (수출업체→본사) ▶ 서류 검토 및 일본후생노동성 등록 (aT→한일대사관→일본후생노동성)

12. 선도유지제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사업</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5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선도조직 연합법인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참여업체별 지원한도 인정

○ 지원 기준
<table><tr><th>선도유지제명</th><th>지원부류(품목)</th></tr><tr><td>전처리제</td><td>화훼류</td></tr><tr><td>이산화탄소 흡수제</td><td>김치류</td></tr><tr><td>이산화탄소 처리제</td><td>딸기, 버섯</td></tr><tr><td>훈증살균제</td><td>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td></tr><tr><td>선도유지팩/패드</td><td>과실류, 채소류</td></tr></table>*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atess.at.or.kr 참조</td></tr>
<tr><td>신청방법</td><td>○ 신청 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연중)

○ 제출 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용내역서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제출 필수
* 수출신고필증, 선도유지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td></tr>
</table>

4 통관 및 물류지원

13. 수출물류비 지원

개 요	○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 안전관리지침>,<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29%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9% 이내/수출업체) 지자체(20% 이내/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 * (중앙물류비)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의 경우 협의회 미가입 시 5%, 수툴통합조 구성품목의 경우 통합조직 미가입 시 2.5% 지원 **내 용**: • '191.1~12.31 수출물량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월 2회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운송방법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29% 이내)
추진절차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 (상시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월 2회)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 `19.1.1.이후 수출물량은 `19.1월말부터 신청·접수 예정
담당부서	○ aT 수출농가지원부 – 담당자 : 장정호 차장(061-931-0821), 이보령 대리(061-931-0823) ○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양진현	031)8060-6054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주식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본부	장재완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수진	053)218-4907
강원	강원지역본부	최승희	033)920-1543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곽기훈	051)947-1091
충북	충북지역본부	권덕중	043)902-9526	경남	경남지역본부	안보람	055)274-4813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은지	042)389-5023	제주	제주지역본부	강주미	064)748-9479

14. 항공공동물류활성화

개 요	○ 항공공동물류 규모화, 공동화를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운송비 절감 유도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사와 MOU체결 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해 할인된 운임 제공 * 2018년 MOU체결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KLM,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 공동물류 참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 (항공)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진행절차	○ 수출업체 모집 및 신청(수시) ▶ 이용실적 보고 및 인센티브 신청(매월) ▶ 인센티브 지원(매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문의처	○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 김지원 대리(061-931-0983)

15. 해외공동물류센터

<table>
<tr><td>개 요</td><td>○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70~90%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해외공동물류센터</td><td>냉동 • 냉장창고</td><td>(신선)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td></tr>
<tr><td>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td><td>이용료의 50%</td></tr>
<tr><td>도쿄소포장센터</td><td>소포장센터</td><td>임차료의 60~80%</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추진계획 수립 ▶ 모집 및 선정(2월)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td></tr>
<tr><td>이용방법</td><td>aT해외지사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수출업체 ② 선적 → 위탁 물류업체 (창고) ④ 운송 → 유통업체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④ 물품인도
바이어</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 황 : 16개국 53개소
○ 계 획 : 17개국 55개소('19년)</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
김지원 대리(061-931-0983)</td></tr>
</table>

16. 중국 콜드체인 구축사업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td></tr>
<tr><td>지원대상</td><td>○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칭다오물류센터→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주요 거점(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
– 냉장식품 및 신속운송이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

○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20~100백만원
– ‘19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table>
<tr><th>구분</th><th>출발지역</th><th>도착지역</th><th>지원내용</th></tr>
<tr><td>정기선</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
운송료의
80%</td></tr>
<tr><td>정기선
(거점지역내
배송)</td><td>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청두)</td><td>• 거점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td></tr>
<tr><td>비정기선</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
운송료의
80%</td></tr>
<tr><td>비정기선
(항공운송)</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td></tr>
</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18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table>
<tr><th>지원내용</th><th>지원방법</th><th>이용업체 선정</th></tr>
<tr><td>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80%)</td><td>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td><td>-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td></tr>
</table></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2월) ▶ 업체평가, 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19.2월 중~2월 말
○ 참가신청 :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td></tr>
</table>

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개 요	○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지원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생산자조직·단체] -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수출업체]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 원산지 증명서 · 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추진절차	2~3월: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모집 ▶ 3월: 지원대상 선정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 4~11월: 사업시행 ▶ 11월: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 12월: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홍보
이용방법	○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 신청 기간 : 2019. 2～3월(예정) ○ 사업 시행 : 2019. 4~11월
담당부서	○ aT 수출정보부 (hjh@at.or.kr)

18.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지원품목
및
지원내용</td><td><table>
<tr><th>지원품목</th><th>지원내용</th></tr>
<tr><td>수출농식품 전반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td><td>• 지원비율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국내외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
○ 사업기간 : `19.1월~11.30일
○ 지원형태 : 내달 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
– 가 공 식 품 : 80백만원(60업체)</td></tr>
<tr><td>이용방법</td><td>○『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관련 증빙서류(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역본부에 제출</td></tr>
</table>

19. 수출보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지원항목</th><th>환변동보험</th><th>단기수출보험</th></tr>
<tr><td>지원대상</td><td>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가입비</td><td>일반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td></tr>
<tr><td>지원비율</td><td>가입보험료의 95%</td><td>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td></tr>
<tr><td>지원한도</td><td>40백만원 한도</td><td>40백만원 한도</td></tr>
</table>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진행절차</td><td>○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단체보험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td></tr>
<tr><td>문의처</td><td>○ aT 농산수출부
– 담당자 : 김서연 대리(061-931-0833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table>
<tr><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r>
<tr><td>중앙지사</td><td>02-399-7452
02-399-6964</td><td>대전세종충남지사</td><td>042-526-3291</td><td>경남지사</td><td>055-286-9394</td></tr>
<tr><td>강남지사</td><td>02-551-0481</td><td>충북지사</td><td>043-236-1301</td><td>전북지사</td><td>063-276-2363</td></tr>
<tr><td>구로디지털지사</td><td>02-6300-6300</td><td>강원지사</td><td>033-765-1063</td><td>광주전남지사</td><td>062-226-4823</td></tr>
<tr><td>경기남부지사</td><td>031-259-7600</td><td>부산지사</td><td>051-245-6440</td><td>제주지사</td><td>064-751-6602</td></tr>
</table></td></tr>
</table>

〈참고〉

▌환변동보험 종류▐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부담 - 통화 : USD, JPY, EUR, CNY - 조기결제 가능
	범위선물환 (Range Forward)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에 노출되나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시 환수금 납부 * 보상시작환율 : 보장환율-10/-20/-30 * 환수시작환율 : 보장환율 +α	○ 보험료 일반선물환과 동일한 수준이나 일정범위 환위험 노출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옵션형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Spread Option)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최대 외화당 20~80원 한도 범위 내),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 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Option)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 상승 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하며,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40백만원 한도임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02-399-7452 02-399-6964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1	경남지사	055-286-9394
강남지사	02-551-0481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구로디지털지사	02-6300-6300	강원지사	033-765-1063	광주전남지사	062-226-4823
경기남부지사	031-259-7600	부산지사	051-245-6440	제주지사	064-751-6602

〈참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사항

■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1백만원 ~ 1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1천만원 ~ 5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훈증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조사, 소송 등)
보험요율 무신용장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4%	0.7%
보상거절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
보상시기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 상 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구 분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우대내용	담보위험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

20. 해외인증 등록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대 상
인증제도</td><td>○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tr><th>지원기준</th><th>지원범위</th><th>지원한도</th></tr><tr><td>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td><td>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 제품 시험비용 등</td><td>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td></tr></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 지원신청서 제 출 ▶ 신청서 검토 후 대상업체 선정 ▶ 관련증빙 제 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역본부에 정산 요청</td></tr>
<tr><td>이용방법</td><td>○ aT본사에는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지원대상자 안내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 수출업체는 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역본부에서는 신청내역 검토 후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 aT지역본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지원내역 안내 및 사후관리
○ aT지역본부에서는 지원 결과를 본사에 보고</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마케팅지원부
– 담당자 : 문정호 대리(061-931-0964)</td></tr>
</table>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td></tr>
<tr><td>보급현황</td><td>○ 할랄시장의 매출규모는 ’14년 13,900억달러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전세계 인구의 18억 명, 2020년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td></tr>
<tr><td>인 증
취득절차</td><td>○ 인도네시아 : MUI 부속기관인 LPPOM-MUI에서 발급
– 품목별 100만 ~ 500만 루피아 및 약 1 ~ 2개월 소요
○ 말레이시아
– 할라 로고 개발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부기관 JAKIM은 12년부터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됨
–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가 할랄증명서 발급
–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가 동등성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기관이 됨
<table>
<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와 인증서</th></tr>
<tr><td>Document Approval
↓
Premise Inspection/Audit
↓
Report Writing
↓
Panel Committee
↓
Issuance of Halal Certificate
↓
Monitoring and Enforcement</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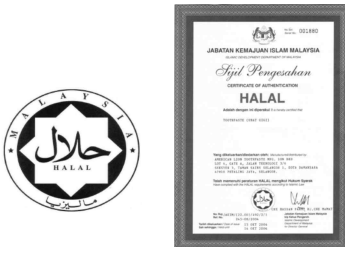
</td></tr>
</table></td></tr>
<tr><td>해 외
발급기관</td><td>
<table>
<tr><th>국 가</th><th>발급기관</th></tr>
<tr><td></td><td></td></tr>
</table></td></tr>
</table>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코셔(Kosher)’란 히브루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는 제도</td></tr>
<tr><td>보급현황</td><td>○ 코셔 인증 소비자 : 유대인, 무슬림, 제7안식교인, 웰빙 추구 소비자
– 전세계 유대인 수 : 약 1,350만명(이스라엘:576만명 / 미국:528만명 추정)
– 미국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
–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
○ 전 세계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셔 식품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식재로로 인식되고 있다.</td></tr>
<tr><td>인 증
취득절차</td><td>○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 ~ 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
○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육류) 등으로 구분
○ 인증 절차 및 마크
<table><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th></tr><tr><td>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td><td>ORTHODOX UNION</td></tr></table>○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td></tr>
</table>

5 현지 유통망 개척

2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대상</th><th>지원 비율</th><th>지원 한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 부스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내 1부스 무상제공</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장치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내 1부스 무상제공</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기본비품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운송통관비 / 전기료
냉장(냉동)비품임차비</td><td>신선농산물 수출업체</td><td>100%</td><td>300만원</td><td>신선농산물에 한함</td></tr>
</table>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31회 참가
○ 계획 : ‘19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20년 참가계획 확정(’19.10월)</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able>

〈참고〉 '19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31회
1.모스크바(PROD EXPO)	러시아/모스크바	2.11-2.15
2.두바이(Gulfood)	UAE/두바이	2.17-2.21
3.멕시코(Alimentaria)	멕시코/과달라하라	3.5-3.7
4.도쿄(Foodex Japan)	일본/도쿄	3.5-3.8
5.애너하임(NPEW)	미국/애너하임	3.7-3.9
6.폴란드(World Food Poland)	폴란드/바르샤바	3.7-3.9
7.영국 런던(IFE)	영국 /런던	3.17-3.20
8.파나마(EXPOCOMER)	파나마/파나마시티	3.27-3.30
9.베트남 호치민(FHV)	베트남/호치민	4.24-4.26
10.북경유아용품박람회(MICF)	중국/베이징	4.27-4.29
11.캐나다(SIAL)	캐나다/토론토	4.30-5.2
12.브라질(APAS)	브라질/상파울로	5.6-5.9
13.스위스(Vitafoods Europe)	스위스/제네바	5.7-5.9
14.상하이(SIAL China)	중국/상하이	5.14-5.16
15.방콕(Thaifex)	태국/방콕	5.28-6.1
16.미얀마(F&H Myanmar)	미얀마/양곤	6.5-6.7
17.타이베이(Food Taipei)	대만/타이베이	6.19-6.22
18.광저우(China IFE)	중국/광저우	6.26-6.28
19.말레이시아(MIFB)	말레이/쿠알라	6.26-6.28
20.뉴욕(Fancy Food Show)	미국/뉴욕	6.30-7.2
21.필리핀(Wofex)	필리핀/마닐라	8.7-8.10
22홍콩(HKTDC Food Expo)	홍콩	8.15-8.17
23.홍콩신선(asia fruit logistica)	홍콩	9.4-9.6
24.호주(Fine Food Australia)	호주/시드니	9.9-9.12
25.모스크바(WFM)	러시아/모스크바	9.16-9.19
26.인도(World of Food India)	인도/뭄바이	9.27-9.29
27.독일(ANUGA)	독일/쾰른	10.5-10.9

② 개별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내역</th></tr>
<tr><td>지원한도</td><td>• 5,000천원 / 1회</td></tr>
<tr><td>해당지역</td><td>•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지원</td></tr>
<tr><td>지원항목</td><td>•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전시품 운송통관비(운송사를 통한 운송통관비만 지급)</td></tr>
</table>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전년 12월 하반기 : 당년 5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220회
○ 계획 : '19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td></tr>
</table>

22. 바이어 거래알선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table>
<tr><td>개 요</td><td>○ 해외aT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 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로 새로운 수출거래선 창출</td></tr>
<tr><td>지원대상</td><td>○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 국내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바이어 한국 출장 및 상담기회 제공
–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 기타 교통편의 등
–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사전 매칭된 수출업체와 1:1 상담
○ 국내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td></tr>
<tr><td>지원절차</td><td>모집공고 ▶ 국내업체 바이어 매칭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미정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bms.at.or.kr)
→ 상담 스케줄 확인(bms.at.or.kr)</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2017, 2018)
<table>
<tr><th>행사명</th><th>실시일</th><th>초청 바이어</th><th>참가 수출업체</th><th>상담금액 (천불)</th></tr>
<tr><td>상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17.6.13</td><td>97명</td><td>314개</td><td>237,703</td></tr>
<tr><td>하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17.11.29</td><td>111명</td><td>255개</td><td>163,004</td></tr>
<tr><td>평창 동계 올림픽 연계 BKF 2018</td><td>‘18.02.22</td><td>73명</td><td>209개</td><td>105,157</td></tr>
<tr><td>하반기 Buy Korean Food 2019</td><td>‘18.10.24</td><td>145명</td><td>317개</td><td>290,220</td></tr>
</table>
○ 계획(2019)
– 상반기 Buy Korean Food 2019 개최(5월 22~23일)
– 하반기 Buy Korean Food 2019 개최(10월 예정)</td></tr>
</table>

② 수출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개 요	○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계약 수주를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 숙박비 : 40만원 이내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업체 선정 및 사업 실행 ▶ 결과보고 제출 ▶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1회(상반기)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 ○ 선정심사기준 : 초청바이어 국가의 시장성, 상담품목의 수입확대 가능성 및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2018) : 85명 ○ 계획(2019) : 90명

23.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사업기간</td><td>2019. 1월 ~ 11월말(3~10개월 내외)</td></tr>
<tr><td>사업내용</td><td>숍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로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등</td></tr>
<tr><td>지원국가</td><td>설치지역 : 동남아(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홍콩, 베트남) 5, 서남아(인도) 1,
중앙아(카자흐스탄, 몽골) 2, 유럽(폴란드) 1 등
※ 홍콩, 베트남(호치민)은 신선농산물 전문 매장 모집
* 지원국가는 사업 수요 등에 따라 변경 가능</td></tr>
<tr><td>지원내용</td><td>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td></tr>
<tr><td>지원기준</td><td>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정산(80%, 75%, 70%)</td></tr>
<tr><td>지원한도액</td><td>〈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차등〉 (단위: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지역</th><th>운영기간</th><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 rowspan="12">지원한도
(백만원)</td><td rowspan="3">유럽,
중국,
K-Fresh Zone,
파일럿 숍</td><td>3개월 이상</td><td>15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td><td>200</td><td>130</td><td>85</td></tr>
<tr><td>9개월 이상</td><td>260</td><td>200</td><td>110</td></tr>
<tr><td rowspan="3">동남아
중앙아</td><td>3개월 이상</td><td>14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td><td>190</td><td>120</td><td>80</td></tr>
<tr><td>9개월 이상</td><td>240</td><td>190</td><td>100</td></tr>
<tr><td rowspan="3">서남아
중동</td><td>3개월 이상</td><td>13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td><td>180</td><td>100</td><td>70</td></tr>
<tr><td>9개월 이상</td><td>220</td><td>170</td><td>90</td></tr>
<tr><td rowspan="3">중남미
아프리카</td><td>3개월 이상</td><td>12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td><td>170</td><td>90</td><td>70</td></tr>
<tr><td>9개월 이상</td><td>200</td><td>160</td><td>90</td></tr>
</table></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
<table>
<tr><td>세부실행계획 수립</td><td></td><td>운영주체 선정</td><td></td><td>현장점검, 약정</td><td></td><td>안테나숍 개설운영</td></tr>
<tr><td>• 세부실행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td><td>▶</td><td>•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td><td>▶</td><td>• 운영주체 업무약정 체결(본사,해외)</td><td>▶</td><td>• 운영
• 정산
•사후관리(성과)</td></tr>
</table>
</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초
○ 참가신청 : 관할해외지사 or 본사(관할지사가 없는 지역)에 신청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 집계 고득점 순 선정</td></tr>
</table>

24.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td></tr>
<tr><td>지원대상</td><td>○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대상 전략국가 20개국 농식품 수출 희망업체(직접수출가능업체)
- 대기업, 수산물/수산가공업체 제외
<table>
<tr><th>권 역</th><th>최우선 전략국가(6)</th><th>차순위 전략국가(14)</th></tr>
<tr><td>신남방</td><td>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td><td>라오스</td></tr>
<tr><td>신북방</td><td>몽골</td><td>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td></tr>
<tr><td>유 럽</td><td>폴 란 드</td><td>이탈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td></tr>
<tr><td>중동</td><td>-</td><td>사우디아라비아</td></tr>
<tr><td>중남미</td><td>-</td><td>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td></tr>
<tr><td>중남미</td><td>-</td><td>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td></tr>
</table></td></tr>
<tr><td>지원내용</td><td>○ 선정규모 : 70개사
○ 시장다변화사업 활용 프런티어(선도기업) 집중 지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 사항</th></tr>
<tr><td>시장개척육성비
(2~10월)</td><td>◦ 지원내용 : 제품개선, 해외영업, 해외 판촉·마케팅
◦ 지원한도 : 20백만원(국내외 구분없음)
* 집행액의 80%(한도의 50%집행의무)</td></tr>
<tr><td>세일즈 로드쇼
(연 1회)</td><td>◦ 지원내용 : 시장개척비(항공, 숙박, 바이어초청상담회, 시장조사 등) 지원
* 참가비 있음,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사업비와 별도임</td></tr>
<tr><td>상품마켓테스트
(연1회)</td><td>◦ 지원내용 : 재한외국인 파견 전략품목 마켓테스트, 설문조사 지원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사업비와 별도 지원</td></tr>
<tr><td>청년인턴
(연중 1명)</td><td>◦ 지원내용 : 청년 해외개척단 매칭 1명 현지 시장개척 지원 (aT에서 선발 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교육 실시)
-언어 능력 등이 우수한 청년 개척단의 현지 지원으로 수출효과 증대</td></tr>
</table>
* 특이사항 : 프런티어 선정 시 현지 안테나숍(현지 개설 농식품 홍보판매숍)에 입점기회 및 마켓테스트 실시, 거대신흥시장바이어초청상담회(연2회), 민간기획 수출전략 공모, 해외 홍보마케팅 등 참여기회 제공</td></tr>
<tr><td>선정기준</td><td>○ 1차평가 : 전년도 수출액, 기참여실적 * 수출업체 역량진단 필수
○ 2차평가 : 참여사 면접평가(다변화진행단계, 역량, 바이어보유, 세부계획 등)
* '18년 시장다변화사업 참여/기여도/성실도(중도포기자) 등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 적용</td></tr>
<tr><td>진행절차</td><td>당해년도 사업자 모집 (1월)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2월) ▶ 사업이행 약정 ▶ 중간점검 (잔여예산 추가배정 등/5월) ▶ 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td></tr>
<tr><td>모집시기</td><td>○ '18. 2월 중</td></tr>
</table>

25. Global K-Food Fair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해외 주요시장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식품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거래알선 및 수출확대 견인
○ 한국 농식품 잠재 수요층이 많은 지역에는 현지 소비자 대상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한 한국 농식품의 시식체험, 판매 및 홍보 등의 통합마케팅으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붐 조성</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가공수산품 가능, 순수수산물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d>개최계획</td><td colspan="2">8개국 8회(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UAE, 프랑스)</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수출업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행사장 임차 및 장치, 바이어 모집 · 수출상담(통역포함) 지원
- 출장자 항공비 : 업체당 100만원 한도</td></tr>
<tr><td>바이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항공 및 숙박비용 지원
- 소비자체험행사 : 한국농식품 홍보 판촉 등 행사참여 지원</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 B2B 상담회 >
수출업체 모집공고 (1월) ▶ 참가업체 선정 (1월) ▶ 바이어 모집·매칭 (2월~11월) ▶ 수출 상담회 개최 (3~11월)</td></tr>
<tr><td>선정기준</td><td>○ 계량평가(40점) : 수출시장개척의지(제품패키징, 카달로그, 인증취득실적 등)
○ 비계량평가(60점) : 품목 적정성(30점), 시장개척 가능성(30점)
* 전년도 aT K-Food Fair 참가업체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2019년 1월
○ 참가신청 : K-Food Fair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lobal.at.or.kr:8081/kfood)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연동
○ 선정기준 : 개최국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가능성 고려</td></tr>
</table>

26.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 요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u>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u> ○ 판촉사업 지원신청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 – 사업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신선부류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0%, 100백만원 한도 적용 가능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u>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수출전략 품목은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90% 지원</u>
선정기준	○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수출추이, 관련서류(카탈로그, 인증서 보유여부) 등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 ○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진행절차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 (11월)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2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5월)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6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모집시기	○ '19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5~6월 중)
신청방법	○ 모집시기 : 매년 5월, 11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27.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개 요	○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 농식품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전략품목으로 육성
지원대상	○ 대중국 수출전략품목(10개) 수출업체, 수입바이어 등 * 10개 품목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쌀·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국산가공식품(면류, 전통주)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인 삼) 소비성수기 연계, 소비계층별 대중적 품목 맞춤 마케팅 ○ (유자차) 음료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연계 등 채널 다양화 구축 ○ (유제품) 신선우유 및 조제분유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 ○ (쌀, 쌀 가공품) 쌀가공식품과 전략품목(김치, 유자차) 콜라보 마케팅 ○ (삼계탕) 외식기업 연계 메뉴 개발 및 판촉 ○ (포 도)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채널 연계 집중 마케팅 ○ (김 치) O2O매장 및 고급 식품매장 마케팅 ○ (장 류) K-매운맛(고추장 등) 요리 시연 등 홍보판촉 마케팅 ○ (국산원료가공식품)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 홍보판촉 마케팅 ○ (신비즈니스) 민간 주도적 농식품 수출분야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지원 대중국 수출용 신상품 개발, 신유통채널 판매망 구축 등
사업별 추진계획	품목별 추진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사업 실행 ⇒ 정 산
선정방법	○ 신비즈니스 사업 선정절차 : 사업공모 → 1차 평가(계량+비계량) → 2차 평가(PT발표) → 최종선정 및 사업수행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상기 모집방식은 사업공고시 변동가능
신청방법	○공모사업 진행시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28.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원</td><td>농산물가격안정기금</td></tr>
<tr><td>용도</td><td>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td></tr>
<tr><td>지원금리</td><td>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td></tr>
<tr><td>지원비율</td><td>총사업액의 90%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80% 이내)</td></tr>
<tr><td>대출기간</td><td>1년</td></tr>
<tr><td>사업의무</td><td>(중소·중견기업)대출액의 50% 이상 수출이행 (상호출자제한기업) 100%</td></tr>
<tr><td>지원한도</td><td>업체당 200억원 이내</td></tr>
<tr><td>자금배정</td><td>–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과 지원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한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 수출실적(FOB 기준)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 업체 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
•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td></tr>
</table>
</td></tr>
<tr><td>예산규모</td><td>○ ‘19년 : 333,842백만원</td></tr>
<tr><td>추진절차</td><td>○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대출 (지원희망시기) ⇒ 정 산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td></tr>
</table>

29.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table>
<tr><td>개 요</td><td>○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td></tr>
<tr><td>지원대상</td><td>○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을 위해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투자하려는 수출업체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LC로 입증 또는 수출계약서)이 150천$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원</td><td>농산물가격안정기금</td></tr>
<tr><td>용도</td><td>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td></tr>
<tr><td>지원금리</td><td>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td></tr>
<tr><td>지원비율</td><td>총사업액의 80% 이내</td></tr>
<tr><td>대출기간</td><td>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td></tr>
<tr><td>사업의무</td><td>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td></tr>
<tr><td>지원한도</td><td>업체당 20억 원 이내</td></tr>
<tr><td>선정기준</td><td>- 최근 2개년 결산서 기준 적격심사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재무구조(30점),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td></tr>
</table></td></tr>
<tr><td>예산규모</td><td>○ '19년 : 4,800백만 원</td></tr>
<tr><td>추진절차</td><td>○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 기성고 확인 ⇒ 대출 ⇒ 사후관리 (해외인증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L/C, 수출계약서 사본(신규업체), KED신용평가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td></tr>
</table>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본 가이드북의 29건의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제도 명칭의 ㄱ-ㄴ-ㄷ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제도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마케팅지원부	061-931-0963	25p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5	7p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수출정보부	061-931-0879	1p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정책금융부	061-931-1142	35p
농식품 수출바우처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5	9p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5	8p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중국수출부	061-931-0982	34p
바이어 거래알선	마케팅지원부	061-931-0966	28p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시장다변화부	061-931-0884	18p
선도유지제 지원	농산수출부	061-931-0832	12p
선도조직 기반육성	수출농가지원부	061-931-0821	5p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가지원부	061-931-0823	13p
수출보험지원	농산수출부	061-931-0833	19p
수출상품화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842	6p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수출농가지원부	061-931-0822	10p
수출통합조직 육성	수출농가지원부	061-931-0821	4p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2	2p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시장다변화부	ekqusghk@at.or.kr	31p
안전성조사	농산수출부	061-931-0832	11p
중국 콜드체인구축	중국수출부	061-931-0981	16p
항공공동물류활성화	중국수출부	061-931-0981	14p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시장다변화부	ekqusghk@at.or.kr	30p
해외공동물류센터	중국수출부	061-931-0981	15p
해외인증등록지원	마케팅지원부	061-931-0964	22p
해외판촉행사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841	33p
현지화 지원	수출정보부	hjh@at.or.kr	3p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수출정보부	hjh@at.or.kr	17p

<참고 : 연락처>

○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 락 처
서울경기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TEL 02-820-2300 FAX 02-813-7183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888-6162~3 FAX 032-888-6164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7 FAX 033-647-006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3 FAX 043-266-2458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488-8542~3 FAX 042-488-8546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921~4 FAX 063-211-782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TEL 062-940-7006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741-5221~3 FAX 053-741-5224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644-1401~4 FAX 051-644-144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274-8300 FAX 055-274-4810

○ aT 해외지사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국지역본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阳區 广顺北大街 33号院 1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婁山關路 83號 新虹橋中心大厦 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FAX** 86-21-3256-6328
	청뚜 지사	2003 Room, Chengdu Ping An fortune Center No.1,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610041 P.R.C. China (中国四川省成都市武侯区人民南路三段一号成都平安财富中心 610041)	**E-Mail** chengdu@at.or.kr **TEL** 86-28-8283-3376/86 **FAX** 86-28-8283-3396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FAX** 852-2588-1919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岛市 城阳区 流亭街道 双元路 西 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at.or.kr **TEL** 86-532-6696-2229 **FAX** 86-532-6696-2181
도쿄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tokyo@at.or.kr **TEL** 81-3-5367-6656, 6693~94 **FAX** 81-3-5367-6657
오사카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B/D 8F)	**E-Mail** osaka@at.or.kr **TEL** 81-6-6260-7661 **FAX** 81-6-6260-7663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자카르타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62-21-2995-9032~3 **FAX** 62-21-2995-9034
하노이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84-4-6282-2987 **FAX** 84-4-6282-2989
방콕사무소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66-2611-2627~9(내선 12) **FAX** 66-2611-2626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losangeles@at.or.kr **TEL** 1-562-809-8810 **FAX** 1-562-809-1191
뉴욕지사	15 East 40th Street Suite 701 New york NY 10016	E-Mail : newyork@at.or.kr TEL : 1-212-889-2561 FAX : 1-212-889-2560
파리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paris@at.or.kr **TEL** 33-1-4108-6076 **FAX** 33-1-4108-2016
두바이지사	PO BOX 57528 Office #48, Sunset Mall, Jumeirah Beach Rd, Jumeira 3, Dubai, UAE	E-Mail : dubai@at.or.kr TEL : 971-4-339-2213 FAX : 971-4-456-1155